

의안번호	제 2012 - 16 호
보 고 연 월 일	2012. 6. 18. (제42차 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결과 분석 .....	1
1. 개요 .....	1
2. 분석 대상 .....	1
3. 분석의 의의 .....	1
4. 분석 내용 .....	1
II.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	2
III.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	3
1. 개요 .....	3
2. 추진 내역 .....	3
3.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4
IV.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	5
1. 개요 .....	5
2. 영국 양형위원회 및 독일 법원 등 방문 .....	5
3. 세부일정 .....	6
V.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 공개(의 결 후 절차) .....	7
1. 개요 .....	7
2. 관련 규정 .....	7

---

3. 공개 방법 .....	8
4. 추진 일정 .....	8
<b>VI. 2011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b>	<b>9</b>
1. 개요 .....	9
2. 수록 내용 .....	9
3. 2011. 4. 27. 이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	9
4. 향후 추진 일정 .....	13
<b>V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b>	<b>14</b>
1. 개요 .....	14
2. 관련 규정 .....	14
3. 의견수렴 계획 .....	14
4. 시행 일정 .....	16
<b>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b>	<b>17</b>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17
2. 서면 질의 및 회신 .....	17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

# I.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결과 분석

## 1. 개요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선거범죄에 대하여 판결문 및 형사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양형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의 접수·처리 현황, 형량분포, 양형인자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

## 2. 분석 대상

- 2006. 1. 1. ~ 2011. 12. 31. 사이에 선고된 선거범죄의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사건(1심) 1,664건

## 3. 분석의 의의

- 양형기준 연구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선거범죄의 범죄유형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 4. 분석 내용

- 별책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선거범죄)」 기재와 같음

## II.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소위원회 회의	제21차	2012. 5. 30.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li> <li>○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검토</li> </ul>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55차	2012. 5. 21.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li> <li>○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공청회 결과 검토</li> </ul>
	제56차	2012. 6. 4.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li> <li>○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공청회 결과 검토</li> </ul>

### III.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 1. 개요

- 2012. 5. 15.자로 이정훈, 이주원, 이진국, 조석영 전문위원 임기 만료
-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 관련규정과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2. 추진 내역

##### 가.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3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및 직역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 나. 연임 위촉

-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2. 5. 16.자 연임)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2. 5. 16.자 연임)

○ 조석영 대검찰청 연구관(2012. 5. 16.자 연임)

**다. 신규 위촉**

○ 이종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2. 5. 16.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라. 전문위원 구성**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수석 전문위원	구회근							
총괄팀	구회근	함석천	심재철					
제1팀	함석천		조석영	최진녕	강우예	안효질	이수정	이진국
제2팀	심재철	최형표		범 현	김혜정	이종교	이주원	정순섭

**3.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2. 6. 18. (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이종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V.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 1. 개요

-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양형기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 양형위원회의 각종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습득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 2011년 미국 양형위원회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양형위원회와 영국·독일의 법원 등을 방문하여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시행 경과와 영국 및 독일의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수집하고 향후 한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

### 2. 영국 양형위원회 및 독일 법원 등 방문

- 방 문 자 : 위원장, 여상훈 위원, 하태훈 위원, 운영지원단장
- 기 간 : 2012. 6. 30.(토) ~ 2012. 7. 8.(일) [8박 9일]
- 국 가 : 영국, 독일
- 방문기관 : 영국 양형위원회, 런던 소재 형사법원, 독일 연방법무부, 독일 연방대법원, 칼스루에 소재 주 지방법원

### 3. 세부일정

일 시	방문기관	내용
6. 30.~ 7. 1.	출국	
7. 2.	영국 양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양형위원회 위원장(또는 위원) 면담</li> <li>· 영국 양형위원회 소속 직원 인터뷰</li> <li>· 양형기준 설정 관련 각종 자료 수집</li> </ul>
7. 3.	런던 소재 형사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판사 인터뷰</li> <li>· 양형심리절차 참관</li> </ul>
7. 4.	독일연방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현황 및 주요 업무 파악</li> </ul>
7. 5.	독일연방대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 견학</li> <li>· 대법원 판사 인터뷰</li> </ul>
7. 6.	칼스루에 주 지방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지방법원장 면담</li> <li>· 주 지방법원 판사 인터뷰</li> <li>· 양형심리절차 참관</li> </ul>
7. 7. ~ 8.	귀국	

## V.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함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 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예정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2. 6. 18. 양형위원회 제42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2. 6. 하순(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2. 7. 초순(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 VI. 2011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 1. 개요

- 2012. 3. 5. 양형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201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의안번호 제2012-10호)이 의결됨에 따라 2011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 2. 수록 내용

- 2011. 4. 27. ~ 2012. 4. 26.까지의 제3기 양형위원회 활동 및 2012년도 활동계획

### 3. 2011. 4. 27. 이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 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8회)

차 수	일 시	안 건
34차	2011.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기 위원회 출범식</li> <li>▪ 위원회 현황 및 양형기준 설정 경과보고</li> </ul>
35차	2011.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의결</li> </ul>
36차	2011.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기 양형기준 설정방향 심의</li> <li>▪ 양형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계획 의결</li> <li>▪ 자문위원단 위촉 계획 의결</li> </ul>
임시5차	2011.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에 대한 심의</li> <li>▪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의결</li> <l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보고</li> </ul>
37차	2011.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li> </ul>

차 수	일 시	안 건
38차	2011.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의결</li> <l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 계획 의결</li> </ul>
39차	2012.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교통, 폭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의결</li> <li>▪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의결</li> <l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 계획 수정 및 제6차 공청회 개최 계획 의결</li> </ul>
40차	2012.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결</li> <li>▪ 201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 의결</li> </ul>

나. 소위원회 회의(2회)

차 수	일 시	안 건
19차	2011.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심의</li> <li>▪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안 심의</li> <li>▪ 양형기준 이탈이유 기재방식 등에 관한 양형정책 의견발표안 심의</li> </ul>
20차	2012.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회신 심의</li> <li>▪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심의</li> <li>▪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심의</li> <li>▪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심의</li> </ul>

다. 전문위원 회의

(1) 전체회의(14회)

차 수	일 시	안 건
-----	-----	-----

차 수	일 시	안 건
40차	2011.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검토</li> <li>양형기준 설정 시기 등에 관한 검토</li> </ul>
41차	2011.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청회 및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li> <li>전문위원 연구과제의 팀별 분장</li> </ul>
42차	2011.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li> </ul>
43차	2011.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li>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li>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li> </ul>
44차	2011.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li>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ul>
45차	2011.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li> <li>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방안 검토</li> <li>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ul>
46차	2011.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li> <li>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ul>
47차	2011.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검토</li> <li>증권·금융,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ul>
48차	2012.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검토</li> <li>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li> <li>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ul>
49차	2012.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li> <li>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검토</li> </ul>
50차	2012.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권범죄의 유형별 권고 형량범위 재검토</li> </ul>
51차	2012.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범죄 주무 전문위원 선정 및 향후 전문위원 회의 방식 등 논의</li> </ul>

차 수	일 시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및 유형분류 검토</li> </ul>
52차	2012.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및 유형분류</li> </ul>
53차	2012.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li> <li>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li> </ul>

## (2) 팀별회의

### (가) 제1팀(3회)

차 수	일 시	안 건
35차	2011.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 지식재산권범죄의 주무 전문위원 선정</li> <li>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작성 방안에 관한 검토</li> </ul>
36차	2011.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li> </ul>
37차	2011.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방안 검토</li> <li>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li> </ul>

### (나) 제2팀(1회)

차 수	일 시	안 건
28차	2011.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군 및 연구과제별 주무 전문위원 선정</li> <li>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li> <li>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li> </ul>

## 라. 공청회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2012. 3. 12.)

- 증권·금융,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2012. 3. 26.)
-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 마.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 4. 향후 추진 일정

- 연간보고서 초안 작성 : 2012. 5. 중순 ~ 6. 하순
- 견본 제작 : 2012. 7. 초순
- 위원 회람 : 2012. 7. 중순(전자파일 형태로 송부 예정)
- 교정 작업 : 2012. 7. 하순
- 인쇄 의뢰 : 2012. 7. 하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 2012. 7. 하순 ~ 8. 초순

## Ⅶ.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3. 의견수렴 계획

#### 가. 대상 기준안

- 제42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7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될 예정인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나. 대상 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법제과장	
9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0	연구기관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1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2		한 국 법 제 연 구 원	비교법제연구실장
13		한 국 선 거 학 회	회장
14		한 국 선 거 협 회	이사장
15		한 국 정 당 학 회	사무국장
16		한 국 정 치 학 회	사무국장
17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8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9	유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0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1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6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27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2. 6. 20. ~ 2012. 7. 19.

○ 의견조회 취합 : 2012. 7. 말경

※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 제43차 회의(2012. 8.) 시 보고 예정

##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2. 5. 20.	○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개진
2	2012. 5. 25.	○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개진

-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2. 서면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내용

순번	접수일자	질의 요지
1	2012. 3. 29.	○ 횡령·배임 및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이 '특가법'의 법정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
2	2012. 5. 22.	○ 법원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진정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권고적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양형 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양형기준은 전형적인 다수의 사건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예외적인 소수의 사건까지 망라하여 해당 범죄의 모든 사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님.

- 뇌물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에 정한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 다수의 사안에서는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인 ‘9년~12년’의 형을 선고하거나 ‘9년~18년’(특별조정의 경우 상한의 1/2 추가 가중)의 형을 선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관은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이 특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리고,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에 무기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권고형량범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님.
- 진정인의 의견은 이미 양형기준 제정 당시 전문위원회의 및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참여한 공개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현행 양형기준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른 것임.
- 다만,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수정·변경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논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전문위원회의 및 양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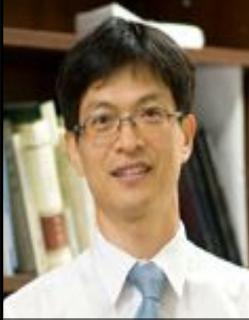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정인이 시정을 요청한 바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

[별지]

##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이 중 교 (李 仲 敎)
	생년월일	1968년 1월 24일생 (양), 45세
	출 생 지	서울
	직 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수원기수	28기
<b>학 력</b>		
○ 1986. 한성고등학교		
○ 1990.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b>주 요 경 력</b>		
○ 1989.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 2001.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1.03 - 2003.02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02 - 2006.02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6.02 - 2008.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8.04 - 변호사 개업(이중교 법률사무소)		
[現]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회 입법지원 위원		
[現]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現]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